동탄 A107 숨마레이앙 입주자모집공고

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
구글플레이스토어
애플앱스토어

※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종고급아파트(이하 '신종아파트')는 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 주택시장 동향조사 보고서 산정하였으며, 한국감정평가사 주택시장 동향조사 보고서 산정하였으며, 인근 적정평가 사례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출하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으며,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 하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합니다.
- 청약Home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또는 모바일 청약Home 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사람(이하 '입주자')과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「주택법」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래 의무신고 기간이 적용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및 자금조달계획 증빙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5조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해당 주택 및 해당 주택이 속한 일정 범위 내 다른 주택에 대한 청약을 제한하고,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해당 주택 및 다른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5조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해당 주택 및 해당 주택이 속한 일정 범위 내 다른 주택에 대한 청약을 제한하고,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해당 주택 및 다른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5조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